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가단501496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2016. 4. 28.

판결 선고2016. 5.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488,750원 및 그 중 128,488,744원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2016. 4.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15. 9.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5. 9. 25. 접수 제665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보증금액 1억 2,750만 원, 피보증인 소외 회사, 보증기한 2016. 3. 31.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전항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4. 2. 신한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2015. 10. 31.에 이르러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신한은행의 요구에 따라 2015. 12. 17. 전항의 피고 회사 대출채무 중 128,509,974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21,230원을 회수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5. 9. 25.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1,000만 원에 피고 C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 갑 제8호증의 1,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위 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신한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구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였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지 약 한 달 만에 피고 회사가 폐업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에게 채무를 지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피고 B의 재산상태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종특별자치시장, 아산시장, 한국신용정보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아래와 같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 적극재산: 합계: 41,338,800원(= 아래 ① + ②)

① 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 8,808,400원(= $244\text{m}^2 \times 36,100\text{원}/\text{m}^2$)

② 세종특별자치시 D 전 1,256 m^2 (이하 위 토지는 'D 토지'라고 한다) 1/2 지분: 개별공시지가 32,530,800원(= $1,256\text{m}^2 \times 51,800\text{원}/\text{m}^2 \times 1/2$ 지분)

■ 소극재산: 합계 415,948,000원(= 아래 ① + ② + ③ + ④)

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무: 128,488,000원

② 서세종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50,000,000원

③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9,303,000원

④ 신한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208,157,000원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토지 외에 개별공시지가 32,530,800원인 D 토지의 1/2 지분이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D 토지에는 이에 앞서 2015. 1. 22.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서세종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근저당권을 고려하면 D 토지의 원고 소유인 1/2 지분 중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부분은 없으므로, 사실상 이 사건 토지만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폐업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의 약 열배에 달하는 무자력 상태에서, 사실상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소비하기에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위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를 매수한 피고 C이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피고 C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C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소외 E이 이 사건 토지에서 장기간 양봉업을 해왔는데 피고 B이 토지매입을 권유하여 E의 아들인 피고 C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한 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E이 피고 B의 사촌형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5촌 당조카인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도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C에게 먼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5. 10. 2. E이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000만 원으로 지급되었고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체되지 아니하였다.

위 피고들의 관계,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도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1,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은행계좌를 통해 이체하지 아니하고 굳이 은행계좌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다 제1부터 4호증(가시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아

별지